

# 학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1. 개정 사유

- 1) 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개정사항 반영
- 2)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개정사항 반영

## 2. 주요골자

- 1)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 및 관련 전문가 위원 선임절차 변경
- 2)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에 대한 기준금액 범위 변경

## 3.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  | 비 고                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65조(등록금)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입학금 및 수업료, 기타 납입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업료는 수강신청학점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징수금액, 징수방법, 징수기일 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학생이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 <u>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</u>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<u>납부하여야</u> 할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의 <u>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</u>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⑤ &lt;현행&gt;</p> | <p>제65조(등록금) ① &lt;현행&gt;</p> <p>② &lt;현행&gt;</p> <p>③ <del>-----납부연기를 신청 하는 경우-----</del><br/> <del>-----납부해야-----</del><br/> <u>3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금액</u> <del>-----납부기일-----</del>. 이 경우 납부 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.</p> <p>④ ~ ⑤ &lt;현행&gt;</p>       | <p>&lt;자구수정&gt;</p> |
| <p>제67조의 2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~ ② &lt;현행&gt;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<u>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④ ~ ⑥ &lt;현행&gt;</p>  | <p>제67조의 2(등록금심의위원회) ① ~ ② &lt;현행&gt;</p> <p>③ <del>-----</del><br/> <del>-----</del>, <u>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,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한다.</u></p> <p>④ ~ ⑥ &lt;현행&gt;</p> | <p>&lt;단서추가&gt;</p> |

## 4.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